

제426회 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국가보훈부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 상정된 안건

- |   |   |
|---|---|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 2 |
| o 소위원장(이양수) 인사 .....                      | 3 |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 4 |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안이나 자료 등을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본격적으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병기·전현희, 국민의힘 강명구·권성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범계·박찬대·허영 또 국민의힘에서 이양수·추경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번갈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참 인연이 많은, 제가 좋아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쯤 경험해 보고 싶고 연구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일해 보고 싶었던 정무위에서 이렇게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국방위에서 보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잘 모시고…… 저도 꼭 해 보고 싶었던 상임위입니다.

정부 전체의 조정을 맡는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 그리고 금융안정의 금융위, 소비자 보호의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인권 신장을 위한 국민권익위와 국가의 자격 또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부까지 두루 역할을 하게 되어서 뭔가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또 제 스스로의 열정을 통해서 빨리 배우고 함께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의 추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오늘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다음에 출석하시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오전에 전체회의, 오후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면 또 전체회의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의결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14시에 개회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이셨던 국민의힘 권성동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 추경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한홍**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o 소위원장(이양수) 인사

(10시14분)

○**위원장 윤한홍** 이양수 위원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오자마자 감투 쓰네요.

○**이양수 위원** 오자마자 감투를 썼다고 합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할까요, 지금 하시겠어요?

○**신장식 위원** 사전에 하시지요, 짧게.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신장식입니다.

사재출연은 더 이상 못 하겠고 자신은 청문회 나오겠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김병주 회장이 얼마 전에 한 얘기입니다. 여당 위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이견 없이 김병주 회장 불러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합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장외에서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빠르게 여야 간사님들 합의해서 청문회 개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삼부토건 추가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소 방문했고 추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수준으로 단속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했는데 검찰이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사건 보냈습니다. 적어도 23년에서 24년까지 이 사건 거래소와 금융위가 지원시킨 것 아닌지 제가 꾸준히 의혹 제기해 왔고요, 관련해서 삼부토건 청문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 청문회, 사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사례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쿠팡 택배……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간사님들 협의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양 간사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하고 나서 하세요. 추경안 상정하고 하시지요.

○한창민 위원 아니,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위원장 윤한홍 같은 내용인데 또 하시겠어요?

○한창민 위원 예, 그래도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분 드리세요.

○한창민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두가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홈플러스·MBK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뤄진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10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민생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청문회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10만 명이 넘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임점업체 직원들, 채권자들까지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을 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간사분들께서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MBK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들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7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차주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권 전반의 채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연체 채무에 대하여 일괄적인 소각을 시행할 경우 채무조정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경험이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에게 향후에도 유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형성시킴으로써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채무조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추진방식, 대상 채무, 지원대상 등 개략적인 내용은 정해졌으나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무조정 세부요건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을 설치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덕적 해이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 형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근 신청요건 완화, 신청창구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이 단순히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약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립묘지 참배객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2개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료비 지원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안에는 국가보훈부 소관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증액사항 및 1개 세부사업에 대한 감액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보훈대상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부족한 진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하려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집행액의 평균으로 편성한 추경안은 연내 집행소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 편성액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안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12개의 국립묘지에 대한 시설보수 공사 확대는 각 국립묘지에 시설보수 공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참배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향에 따른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적기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요하는 사업, 상대적으로 공기가 긴 사업,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손들어 주십시오,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왼쪽 분들만 하시네. 알겠습니다.

손 내려 주시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추경 사업 중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민국 위원 이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여기 사업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니까 이와 같은 동일 조건에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4월까지,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상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와 같은 조건에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았던 분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제로 상환했던 분들이 무려 361만 2119명이에요.

361만 명이 됩니다. 상환 금액만 해도 1조 581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올해 4월까지 상환한 채무자도 31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361만 명은 뭐가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질문 주시면 나중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았던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분들은, 도대체 361만 명은 뭐가 되는가.

이분들에 대한 다른 메리트를 준다든지 혜택이 있나요, 혹시나?

○**금융위원장 김병환** 채무는 기본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갚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실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자부담 경감해서 1인당 한도 300만 원까지 해서 지난번에 전체 한 2조 1000억 정도를 지원한 적이 있고 또 은행권 스스로가……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아예 없애 주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시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새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이렇게 되면 금융의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이 이런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만들 때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실제 7년 이상 장기채권, 장기연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 갚는 분들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거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본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한대도. 그런데 올해 4월까지 갚았던 분이 무려 36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왜 내가 갚았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또 한 가지 오류가 뭐냐니까 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필요 재원 중에 절반을, 4000억 원을 금융기관 협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준다고 해 놨더라고요.

위원장님, 현재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 업권별·기관별 출연금 예상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번에 통과를 시켜도 이게 1년이 소요된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걸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조차도 없고 정말 똑같은 조건에 힘들어도 어렵게 채무를 갚은, 성실히 상환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안 맞고. 그리고 하면 1년이 걸린다는 데 이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가 공감한다면. 야당 간사인 저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은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말 못 갚으신 분, 정말 재산이

나 소득으로 봐서 이것은 상황이 진짜 어렵다 하는 분을 대상으로 소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예산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1년이 걸리거나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어려운 분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정부가 7년 이상……

PPT 좀 띄워 주시고요.

다시 시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폐업신고자, 불황형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다중채무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숫자……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사실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지원이고 저렇게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돈을? 범인세 감면해서 부자를 지원, 기업들 지원,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숨이 턱에 차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보고 보도하는 것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다 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는데요.

정부가 들어가는 예산,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 4000억인데 정부 예산 4000억 원 들어갑니다. 즉 40배에 달하는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 대비. 이 정도 되면 서민 경제에 있어서 지금 한계의 소비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고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마치면 위원장님께서 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수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캠코에서 보유한 장기채권도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연대보증, 개인 연대보증채권입니다. 심지어 25년 지난 거예요. 연대보증제도는 2015년에 제도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 된 개인 연대보증 채권이 캠코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미 매입해서, 대략 5% 정도로 매입했다고 하는데, 액면가의 5% 정도로, 평균 매입가를 5%로 잡으면 한 800억 원 정도 매입했는데 이것을 채권 소각을 하면 1조 6843억 원 정도 액면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기준 예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채권 한 번 거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대상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빛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 7년간 유지했다면 고통도 심각했을 거고요. 도덕적 해이 말하기 전에 이들을 구제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효과를 정확히 해설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기채권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와의 협약 비율 걱정됩니다. 실제 7년 이상 된 장기채권이면 1금융권에 있을 리가 좀 만무하거든요. 2금융권 특히 대부업으로 많이 이동했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부업체와의 협약 비율이 제로입니다. 한 군데하고도 협약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번 채권도 악성 채권이라서 새출발기금 채권과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새출발기금처럼 대부업체랑 협약 비율이 낮다면 정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돈 빌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약률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지금 새출발기금은 대부업체랑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다른 복안이 있는 건지, 금융회사와 협약이 안 되면, 대부업체 협약 안 되면 소각 대상 되어도 지원 못 받는 것 아닌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를 지원하면 투자고 경영 지원이고, 서민 지원하면 비용이고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부도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을 좀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든 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하십시오.

### ○허영 위원 이 채권 소각 추경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국힘의 철학과 원칙이 보편 지원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시고 선별적 지원하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과 원칙에 맞는 정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말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참으로 가혹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연체자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늘리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화 그다음에 민간소비 위축 그리고 개인파산이 급증해서 악순환의 고리들을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이러한 빚 탕감 정책, 채권 소각 정책을 폐는 것은 단순한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우선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마중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보면 선별적 지원 차원에서 성실 상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별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회복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리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 달에 도입한 정책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그 도입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도입한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경제의 치열한 링 위에서 싸우다가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국가의 마지막 마중물이자 씨앗과 같은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13만 명이나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출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저신용자가 560만 명, 모든 금융 활동이 꽉 막힌 신용유의자가 60만 명 수준에 달합니다. 이분들 그냥 망하게 놔둡니까? 국가는 왜 필요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 주셔서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홍보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선순환 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화되어서 홍보가 좀 강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보니까 최근에 농업인·어업인들의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고, 이게 지역소멸 문제하고 겹쳐서 더욱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얻고 있는 농어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무위나 또 예결위에서 농어업인들에 대한 부채탕감 문제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농어업인도 만약에 개인 채무가 있으면 이번 소각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처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 예.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요? 오천만 국민 중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게끔 우리가 다 해야지요. 서민에 대해서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려한 정치적 색깔로 선전과 선동을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제가 지적했던 거는 뭐냐 하니까 이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것이고 이때 성실하게 갚아 왔던 360만 명의 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해 줄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원에 있어서 4000억에 대한 금융권의 재원을 차출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 수립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정무위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고 하는 분은 오랜 만에 처음 보는데, 저도 허영 위원님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그런 것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호 위원** 우선 PT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저도 장기연체채권 소각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또 여기 집권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책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점을 쭉 지적해 보겠습니다. 스물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은 분들 이야기하셨다시피 도덕적 해이입니다.

빚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빚 안 갚고 장기 있으면 탕감해 준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돈 갚은 사람들은 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빚 갚은 사람은 호구냐.

아시다시피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것 소상공인들 절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는데 이게 뭐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례없는 방식입니다.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민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저는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역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고…… 이게 과연 실속 있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느냐. 실제로 도움되고 우리 신용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거의 없는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고, 2020년에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도 사실은 역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지금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거의 60%가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소득이지만 열심히 투잡 뛰고 알바 하면서 성실 상환하는 사람은 애초에 탕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대출 안 갚고 차라리 베팅길 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역시 기준을 설정하면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마는 단 하루 차이로 또는 한 달 차이로 여기에서 배제되는 부분의 그 불만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이전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리고 빚 탕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신용정보에서도 일단은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연체채무 재조정해서 장기상환으로 가는 부분은 여전히 신용정보 등록에 유지가 됩니다.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에서 4000억, 금융회사에서 4000억인데, 금융업권별 관계된 이 4000억은 금융권하고 대화가 됐느냐. 업권별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업권별로 채권의 질이 다다를 텐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은행권은 오히려 양호한 채권에 상대적으로 규모도 적은데 부실한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등등은 돈 낼 여력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재원 조달 못 하면 결국 이 프로그램도 우습게 된다. 그러면 또 재정으로 펴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있는 곳에서 돈 더 내리’ 하면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러면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의 주주 이익 강화 문제 이것하고도 배치되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도박·유홍·코인·주식투자 빚도 탕감을 하겠다, 업종 제한 없이 탕감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시라.

그러면 과거에 원금 감면받은 사람들 이번에 대상이 되면 또 탕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다. 그러면 한 번 받고 세월 지나고 또 탕감받고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일괄 매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등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재원 투입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문제를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여당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세부 디테일을 다듬어 주시라.

특별한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현승 위원님 하시고 박상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재섭 위원님 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시간 드리세요.

○한창민 위원 PT 자료 준비하는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예.

○한창민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캠코 정정훈 사장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얘기했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사업이고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채권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이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캠코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채권 매입과 추심 사업을 해 온 캠코보다는 채무자의 전체 채무를 조정해 온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금융위원회 예산에 포함된 새출발기금 사업은 원금의 10%를 추심하고 그다음에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사업은 최소 원금의 20%를 추심하는 걸로, 역으로 역산해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캠코에서는 이러한 채무조정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아마 캠코 사장님도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신용회복이라는,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추심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심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캠코에서 독촉장이 날아들고 추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름은 희망이었지만 사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온 이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캠코가 보유한 20년 넘는 채권만 3조 원이 넘어요. 시효를 계속 연장해서 받으려는 것입니다, 20년 넘는 동안 있다는 것은. 그리고民間 추심에 위탁해 가지고 5년간 110 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심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전에는 2000억이 넘는 추심 비용이 진행된 사례도 예전에 한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캠코는 채권을 회수하고 추심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 채무를 고려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캠코에서는 캠코가 가져온 일부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채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채무조정 전과 채무조정 관련한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번에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런데 이런 중요한 차이를 캠코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내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캠코를 통해 가지고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접근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캠코 하나만 이용하면 모든 채무가 잘 정리될 거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사 기준도 현실하고 매우 괴리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고차 지분을 조금 갖고 있다고 조정이 거절된 사례도 이번에 발견됐고 지갑에 1000원 있다고…… 이런 실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매우 다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배드뱅크가 진행되는데 이런 구조가 과거의

기준 때문이라고 하면 오히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걸 담당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 그래야지 이번에 배드뱅크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개선하고 새롭게 우리 국가의 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캠코보다는 채무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자 이게 제 의견이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코가 그동안에 추심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실 신청이 있을 때 관계되는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어떤 협의·조정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에서 봤을 때는 캠코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그 부분의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단단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문제 제기 한번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캠코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경험이 많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캠코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이 내용의 변화가 이번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후임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번에 보훈부에서 추경 편성한 예산 중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예산 8억 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광복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보훈단체가 광복회뿐입니까? 다른 단체 예산은 없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다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광복회에 해당됩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지난번, 작년에 2025년 예산 할 때 논의되다가 국회에서 증액을 못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보

훈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광복회만 콕 찍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 할 때 월남전참전자회 선양 행사 중에서 월남전참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예산 3억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번에 같이 검토가 안 됐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나, 이번의 경우에 광복회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할 때 같이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작년에는 광복회 선양 사업이 6억 원이었는데 2억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독립영웅 아카데미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이 더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5개 증액 사업 중에서 12개가 현충원·호국원 시설 보수·보강 사업인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올해 별씨 편성된 예산의 80%를 소진했는데 그동안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 사회복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금액이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45억 원 증액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위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 보수·보강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더 시급한 거는 지은 지 33년이 지나 가지고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화장실에 녹물도 발생하는 호국영웅 보훈회관 같은 시설, 이것도 작년 예산안에 증액을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증액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억 1000만 원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복회와 관련된 거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했고 지난해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 이미 6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과 연결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12개의 국립묘지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호국영웅 보훈회관에 대한 그 33년이나 된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조율하지만 여러 재정 상황상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이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보훈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 재정 상황상 늘 빠지고 소홀히 되었던 부분들이 여기 계신 정무위원회들과 함께 예결위나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과정에서 모두가 반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네요. 서면으로 할 테니까, 지적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또 일괄 매

입이나 지원 대상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문제 그리고 또 금융권 4000억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하여튼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이 지난 6월 3일 대선 이후 저희 정무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질의응답 하는 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이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을 얘기하셨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 돌아봤습니다만 굉장히 지역에 공실이 많고 특히 제가 지난 1년 전에 국회의원선거 할 때 아주 잘 되던 가게들도 공실이 되거나 주인이 바뀌었거나 이런 상황들을 발견하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 여러 분들한테도 여야 상관없이 여쭤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볼 때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민생의 위기가 심각한지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과거 역대 정부에서 내용에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은 계속 있어 왔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2000년대 초반에 가계부채가 늘기 시작하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때마다 있어 왔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 속에서 동반, 수반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할 때마다 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균형 있게 좀 고민해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확한,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효용성,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필요성들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왔던 자료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거라서 이번에도 추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득자들이, 연소득이 굉장히 적은 저소득자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채권액 같은 경우도 비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큰 비중, 아주 고액 채권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소액 차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은 좀 필요해 왔다라는 것은 다 입증된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사실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또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빚을 안 갚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완납한, 완제된 분들이 한 88만 명 정도, 완제율이 약 66%다 이런 수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이런 대상자들이 이후에도 완납을 하면서 결국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오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자산관리공사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이게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자료들을 볼 때 보면 결국 저소득·소액 차주들이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특히 4000억 부분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실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구체적인 통계들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아예 없는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할 때마다 분명하게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를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김재섭 위원님 하시고 유영하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오후에 예산소위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도 채무탕감 관련해서 갑자기 받은 자료들이 좀 있어서 시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별적 지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별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부자들에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별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100만 명 이상에 지원이 되는 거고 정부가 그중에 한 40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외국인들에 대한 국적, 금융위원회에서는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대략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는 저희들 보고받았는데 상세한 국적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채무탕감을 우리가 민생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저희들 새출발기금이나 기준에 해 왔던 것을 보면 외국인도 조금 폭넓게 그 대상으로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채무를 소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182억이나 되는 그리고 200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께 지원하는 것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쓰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내지는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고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박빚까지도 소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 제도적인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외에 법인 채무까지도 그 대상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법인이면 그 법인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새출발기금의 업종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각하는 것은 개인 채무입니다. 개인 채무인데, 그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채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그게 그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개인 채무인데 그것까지 보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그것까지 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채무탕감 자체가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채무의 성질, 빚의 성질을 따지지 않고 정말로 도박빚이 상당히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채무 소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빚 탕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의 목적에 비추어서 과거의 어떤 빚이거나까지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들로부터 채무를 사 올 때, 매입을 할 때 그런 정보까지 다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거를 아무래도 어떤 거름막을 잘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데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섭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금융위원장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아마 급하게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제도든지 제도의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는 잘 운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만 염려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간 금융회사한테 4000억 정도를 출자받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잘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혹시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저희한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든 제도가 잘 운용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로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까 추경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점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하나 발생되는 게, 이것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연체가 시작된 분들은 지금 장기연체 소각 프로그램에도 해당되지 않고 새출발기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보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여러 불편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이현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복회 지원금 6억 삭감된 건 사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부활시키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 온 것은 좋은데, 2억 부분이 있습니다. 2억 부분이 뭐냐하면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사업 2억이지요.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아주 긴급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후손 참여 독립영웅 아카데미와 청년혜리티지 아카데미에서 2024년 작년에 기존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됐던 거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은 누수 현상 많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어떻겠나 싶고.

과연 갑자기 이 예산이…… 2억이 금액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랏돈은 금액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이것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추경에 2억을 넣으셨는지, 더군다나 아까 보면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이게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도 되지 않고 시행되는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급속도로 졸속으로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마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2억은 돈의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짚어 드리겠는데요. 연천 국립묘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柳榮夏 위원** 지금 현재 봉안묘는 서울현충원하고 대전현충원에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거의 다 안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립연천현충원, 제3 현충원을 만들 때 저는 봉안묘가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봉안당하고 봉안담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장한테 대전현충원 갔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순국선열이나 독립유공자나 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 중에서 안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더라도 안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가 그런 안장묘는, 봉안묘는 아예 없애 놓고 그냥 봉안당과 봉안담만 만들어 놓으면 안장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희망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에 들어와라’ 이러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지금 추세가 화장 추세지만 화장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도 싫어하는 분이 있고 당사자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안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들어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사업이 개시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일부라도 그런 게 부지 마련이 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예산이 좀 초과되면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두 번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를 진정으로 예우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러한 원하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또한 시설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연천현충원에 그렇게 관심 있게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더욱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복회 예산 2억 원에 대한 추경 반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부터 모든 정무위원회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많은 것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급한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또한 그 후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의 많은 요구 사항을 저희 보훈부 공무원들이 귀 기울이고 이것을 또 여야 소위에 나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추경에 굉장히 필요한가 하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광복 80주년이고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잘은 모르지만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맨날 고발하라, 수사하라 이런 얘기 하다가 없는 사람들 채무 좀 탕감해 줘라 하니, 이런 좋은 얘기를 가지고 논쟁이 돼서 아주 흐뭇합니다. 가석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모든 수형자들이 다 가석방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특별사면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전과자들이 전부 다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경제적 사면 비슷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능, 앞서 질문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 천착을 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 채무탕감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 그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추경호 위원님의 스물한 가지 문제점, 다 듣지는 못했지만 한 열몇 가지 듣다가 그중에서 좀 불분명한 것이 있다, 참고가 될 만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간 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아우트라인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지금 대화를 하고 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공감대가 있다, 금융권하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범계 위원** 금융권의 그런 공감대 없이 추경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만들고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금융권 부담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데 그렇게……

**○박범계 위원** 정부가 하는 일이 설마 하니, 저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준비하고 있고 공감이 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범계 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육박지른다든지 무리하게 협박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도박 채무 이런 것이 타이틀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 좋은 취지가 도박 채무도 탕감해 준다……

도박 채무라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본인의 생계업이 있어요. 생계업종이 있습니다. 그 생계업종과 관련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박 전과를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도박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채무조정이라 함은 모든 대상자를 다 채무

조정,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심사를 합니다.

○박범계 위원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 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가석방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복역률이 50%고 어떤 사람은 70%인데 70%는 안 해 주고 50%는 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성격과 그 사람이 최초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를 성립시킬 때의 동기와 그전에, 그 사람이 과거의 얼마만큼 채무에 대해서 진정으로 갚으려는 의지와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도 다 심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심사할 생각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도박 채무 자체가 탕감의 대상이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정보를 심사할 때 그 많은 건을 일일이 다……

○박범계 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금융권으로부터 그 채무의 자료들을 다 제공받기는 어렵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현실적으로……

○박범계 위원 채무 탕감이라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금융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법인이 받은 자료, 법인이 받은 채무의 경우는 채무조정할 때 이 업이 무슨 업인지를 봅니다,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상은 개인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빌렸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도박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얻는 데 제약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그 채무 자료, 금융 자료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채무 탕감이라는 편익을 주기 위해서 네 채무가 정상적인 채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가져오는 데는 대단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시 유념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선 도박 채무라는 그러한 불명예 지적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유념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역대 정부마다 연체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 정책은 계속 가동을 해 왔어요.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새출발기금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이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채무 연체자가 상환 의사도 있고 상환 노력도 있지만 도저히 갚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액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채무 일괄 탕감 프로젝트예요. 아까 김병환 위원장이 무슨 금융권에서 4000억 정도에 대해서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지. 서슬 퍼렇게 이 채무 탕감 프로젝트를 치고 나가니까, 드라이브 거니까 마지못해서 응하겠지요. 금융 질서를 지키려면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더군다나 이건 일반재정에서 투입하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을 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어떤 국민에게 마이크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호주머니에서 돈 내 가지고 이분들 빚 좀 갚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7년 채무에 5000만 원 이하 탕감해 준다? 그러면 5500 채무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부분은 결국 기준을 잡는 부분인데 기준에 신용회복……

○**김상훈 위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무탕감 프로젝트의 디테일한 기준 설정이 아직까지…… 5000만 원 이하는 다 탕감해 주고 5500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액면상의 정책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장사를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워낙 불경기라서 코로나 때 돈은 빌렸지만 갚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선의의 채무 탕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니지요. 소상공인 플러스 전체 개인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고 자꾸 도박·유혹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권장되고 미화돼야 될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꾸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있고 또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융통해서 내줘야 되고,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추경이에요. 나랏빚을 내서 집행하는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빚은 또 누가 갚아야 돼요? 발행하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식들이 이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몇 년 뒤에 갚아야 될 이 채무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미리 당겨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이하 7년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면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고, 만약에 일괄 탕감해 주려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나름대로 ‘아, 채무 탕감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탕감해 줘야 되겠네’라는 디테일하고 정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권장되거나 미화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 개인 연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새출발기금을 할 때는 대상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형평성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해 보면 또 한편의 형평성 문제는 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개인 전체를 놓고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그냥 잡은 건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은 7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게 그 이상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도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체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잡은 거고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수준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5000만 원이 보통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평균 금액이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평균적인 수준에는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7년 이상 연체자 중에는 거의 95%가 5000만 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7년 동안 돈을 못 갚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 소각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채무 면제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정말 상환 능력이 없어서, 어차피 이분들은 이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거고, 그 지원의 취지는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것과 사실상 같은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을 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채무 탕감이든 아니면 채무조정이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 이런 건데요. 저는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공적인 책임을 질 거냐, 금융기관이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재난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정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코로나가 왔는데 그게 개인 책임이냐, 기후재난으로부터 생계 위협이 와서 빚이 늘었는데 그게 개인 책임이냐 이런 유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실패 그게 개인 책임이냐,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진짜 개인 책임인 거냐, 또 IMF 이런 게 개인 책임이냐, 금융위기 거기에 대처가 우리가 좀 부족했다면 그게 진짜 개인 책임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돼 왔는데 관세 문제가 그냥 느닷없이 왔는데, 이건 정부 책임도 아닌데요 물론 개인 책임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그로부터 폭발하는 것은 정말 개인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내버려둬야 되는 거냐, 그게 정부가 혹은 정치가 할 일이냐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잘못된 정보 혹은 정보의 소홀한 제공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상품을 취득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빛이 늘었다 그러면 은행은 책임 안 져야 되는 거냐,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생각하면 금융기관도 할 일이 있는 거지요, 일용 채무 문제든 아니면 탕감이든 조정이든 이런 과정에. 저는 거기에 완전히 봉건시대 같은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생긴 채무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냐, 물론 연대보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무 탕감이든 조정이든 문제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 문제로만 둘 수 없다 이런 것들에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조금 더 기준을 잘 만들면 우리가 많은 논쟁들은 해소할 수 있다. 거기서 정말 세금 안 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의 비슷한 사례, 부자인데 조금의 빚도 안 갚고 10년 20년 버텨 온 이런 것까지 다 봐주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잘 잡아서 정부가 접근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취지인네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의 기간들을 보면 20년 4월에서 24년 11월까지거든요. 이 기간의 내용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특별히 정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제적으로 보면 연준 그다음에 유럽은행(ECB)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재팬은행까지 전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발행한 화폐가 제가 알기로 1경 3000조 정도 됐습니다. 1경 3000조 정도 화폐를 발행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물론 이 기간에 우리도 많은 통화량과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고금리로 바뀌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임차인들의 현황을 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때 가 보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게 민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데 다만 운용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부 당국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금액들을 5%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 채권의 매입 금액이 5%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거기도 다 포기를 하는 자산인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다 보니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신용회복기금이나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 7년 이상 연체한 채권을 얼마에 몇 %로 샀느냐 봤더니 한 5% 조금 넘거나 아마 4%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5%로 잡았는

데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공정한 가치대로 매입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이미 개인파산·회생이나 기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도 이 소각 프로그램이 본인한테 유리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생각은 추가로 여러 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중에 유리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동수 위원**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무쪼록 기준을 잘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어떤 공정성 시비랄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첫날이라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들으려고 그랬는데 입이 근지러워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워졌고 빚이 잔뜩 늘어서 그것을 우리가 행복기금이다, 뭐다 이렇게 채무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청산까지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우리는 그때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대출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줘 가지고 쓰게 하면 그 돈이 소상공인한테 갈 거다 생각해서 돈을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작년 5월 수입이, 순수익이 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이 한 200 정도는 되니까 200을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코로나 시기를 넘겨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행복기금 들어갈 일도 없고 청산해 줄 채권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즉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청산 제도에 대해서 추경호 위원님께서 스물한 가지나 쭉 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은행권에서 지금 한 4000억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겠지요. 사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은행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출 계속 내주고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오지요. 다들 어려웠지만 성과급 잔치 벌인 게 금융권이니까 사실 ‘내라’ 해도 돼요. ‘내라, 니네.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양심 있으면 내놔야지 왜 안 내놓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기업, 관치 금융 이런 것에 또 휘말리게 되잖아요, 강제로 돈 내라 하는 것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사실 은행은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소각, 청산해 주면 250만 원으로 청산되

는 거잖아요. 그러면 125만 원은 국가가 내는 거고 125만 원은 은행이 내는 거지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면 은행은 원래 이 돈을,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 돈 125만 원을 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임 혐의도 있는 거예요.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 못하고 캠코에서 채권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캠코 또 부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취지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금융권이 부담을 해 왔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왜냐하면 그 성격이 원인이 거기서 출발했다라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에서 분담을 해 왔다가 새출발기금을 하면서 워낙 코로나 이후에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이 부분을 빨리 부담을 덜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때 처음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재정이 들어갔고, 이번 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성격으로 봐서는 또 금융권에서도 분담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분담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짰고요. 그 부분에 개별 은행들의 속마음은 어떤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실제 의사결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원 조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양수 위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금융위원회에는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국회의원들한테는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전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하여튼 오늘 나온 말씀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실 금융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답변하는 것……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도 답변을 적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답변하게 되네요.

○이양수 위원 그 질의를 사실은 위원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 해야 되는데 그분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렇게 해 주시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대신에 시행하는 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채무자대리인 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62명인데 사건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감안해서 공단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추경호 위원님 1분만 하세요.

○추경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할게요. 개인의 사적 채무의 원금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에 재정 투입을 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습니까? 이번이 최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건 최초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할 때는 재정 안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드뱅크 장기연체 채무 탕감을 자꾸 코로나와 연계시키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이전, 7년 이상 된 채무 대상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 어려움이 반복될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 선의는 이해를 하나 앞으로 경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기적으로. 이럴 때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사적 채무를 어렵다고 탕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금융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년 연체가 있지만 그사이에 돈을 갚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어서 빚을 더 지게 되니까 빚을 못 갚았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장사 열심히 해서 돈을 갚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고금리·고환율 이런 것에다가 정치적 격변 이런 것 때문에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을 못 갚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7년 전의 사건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며칠 전에 있는 사건까지 다 관련돼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빚은 계속 축적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대응을 보면 어땠느냐 하면요 코로나 이게 개인들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때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은 국가에서 빚을 지고 가계는 빚을 안 졌습니다. 미국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는 빚을 많이 안 지고 개인들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일으켜 쌓잖아요. 2년 거치 3년 분할, 2년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분할해서 원금까지 갚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또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내란 정국 되면서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코로나 손실보상하자고 할 때 엄청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국가의 부담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빚을 지는 형태로 국가가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개인들이 빚을 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를 애

기하고 또 그 빚도 국가예산으로 갚느냐 이렇게 합니다. 매번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적 재난이 개인들의 책임이 아닌데 이것들을 결국 개인들한테 지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손실보상할 때도 안 된다 그러고 거기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지자고 할 때도 도덕적 해이다, 국가예산을 들일 수 있느냐 합니다.

개인들의 책임으로 지금 이 빚이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부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물에 빠진 상태로 그대로 두고 갑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는 앞으로 갑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실 상환자 이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갚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번에 추경을 편성, 저희 금융위 쪽 아니고 아마 중기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성실 상환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 원하면 채무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리를 깎고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치들은 포함돼 있고,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에 대한 지원, 성실한 사람들에 이자 지원 그 다음에 연체 전이라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발언 기회를 그렇게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캠코 사장님, 저희가 손실보상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들 살려 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금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완화하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지금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지금 전체 신청 대비로 해서는, 신청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소득심사 이런 걸 거쳐서 약정을 하는데요 약정률은 지금 한 사오십 프로 정도……

**○민병덕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데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말씀드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빛 탕감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 너무나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정의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다음에 나라도, 국가도 지금 빚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빚을 내서 민간의 빚을 갚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좀 더 정치하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400조가 늘었다. 그렇지만 그 빚을 400조를 쓰고도 경제가 좋아졌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그렇게 많이 써서 빚을 내서 써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입니까? 빚만 남는다. 두 번째는 물가만 오른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빚 탕감 정책을 썼을 때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다른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 몇 년 지나면, 7년 지나면 빚을 깎아 주니까 연체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다는 거니까 정치하게 좀 더 잘 따져 달라.

아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은행이 4000억을 내지요? 그러면 탕감할 때 은행 돈이 들어갑니다. 은행은 어떤 논리냐?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내 돈으로 깎아 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오히려 내 돈을 내서 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보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왜 내 돈 내서 갚아 줍니까,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자발적일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에서 예산심사할 때뿐만 아니라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 세밀하게 짚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것도 남겨 둬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만약에 이번에 빚 탕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분이 나중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탕감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다시 갚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혜택을 본 분이 5년, 10년 후에 다시 재기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탕감 정책의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지요. 그게 없으면 정말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정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너무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추경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규제 정책을 6월 28일 날 시행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게 전 정부기관들, 기획재정부, 국토부까지 다 포함해서 회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게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바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회의를 6월 27일 날 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했어요, 당장. 그러니까 당장 지금 주택대출 한도가 수도권이 6억으로 딱 묶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경과조치는 뒀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뒀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계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낸 사람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기존 제도를 적용받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6억 이상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국이 아우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늘 회의하고 내일 바로 시행하는 금융 정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금융위원회가.....

제가 회의 내용을 보니까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한국은행 다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 정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한홍 정정이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조율을 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요 이게 결국은 주택 사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현금 있는 사람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작용이 큰 정책을 즉시 시행했느냐. 최소 몇 개월의 여유를 두고 국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장 김병환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장 윤한홍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 김병환 시행 시기를 왜 그렇게 다음 날로 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 고민이 만약에 한 달 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에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3단계 DSR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6월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계약을 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의 경우

에는 이번에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선의의 그런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6억이라고 한도를 정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LTV 뭐 이런 것 관계없이 6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서울의 평균 집값을 알고 계십니까? 6억으로 규제를, 상한선을 둬 버리면 아마 서울의 아파트,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 74%가 해당이, 대출을 못 받는다고, 집을 거래를 못 한다고 그래요, 6억 한도로 묶어 버리면. 타격을 본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아예 거래 자체를 막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보통 주택 가격은 평균보다는 중위 가격을 얘기하는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수준이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4억이라고 나오던데 아침 뉴스에는?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니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 1/4분기에 실제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에서 6억 이상 빌린 비중을 봤더니 1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말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약을 둬야 되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6억이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아닐 걸요? 평균 아파트를 거래하는 데 당장 타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대출을 받은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맥시멈으로 다 받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분기 동안에 받았던 것을 분석해 봤더니 6억 이상이 한 10%가 좀 넘는 상황이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는 거의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여러분들, 금융 정책이라는 게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지만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 정책이 바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 정책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창민 위원 이 부분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범계 위원 아니, 현안을 왜 위원장님만 하십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이것은…… 다 끝났어요.

○한창민 위원 이것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인데 위원장님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확인만 해야지……

○위원장 윤한홍 6억 한도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추경호 위원** 그런 맛에 위원장 하는 거지 뭘……

○**한창민 위원**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박범계 위원** 그렇긴 한데 지나친데.

○**위원장 윤한홍** 아니, 지나치지 않아요. 5분 안 지났어요.

○**한창민 위원** 아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긍정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늘 추가경정예산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크게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게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금융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린 거예요. 확인해 드렸고……

○**박범계 위원** 아니,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위원장님……

○**한창민 위원** 이 얘기는 현안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대체토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했던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님이 내신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에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예결소위가 끝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16시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필요하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추경호 한창민 혀영

### ○**청가 위원(1인)**

박찬대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복지증진국장 최병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보훈문화정책관 나치만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의료심의관 한상균  
 보훈단체협력관 강윤진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 행정실장 박주영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이사 남희진  
 기획조정실장 한덕규  
 가계기획처장 문희석  
 새출발인수운영처장 양근영  
 전략사업단장 이해진

## 【보고사항】

##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성동	추경호	국민의힘	2025. 5. 2.
강명구	이양수		2025. 5. 8.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5. 6. 10.
김병기	박범계		2025. 6. 30.
전현희	허영		

## ○ 의안 회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2)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3)

이상 8건 4월 28일 회부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7)

이상 3건 4월 29일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9)

이상 4건 4월 30일 회부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7)

이상 2건 5월 1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4)

5월 2일 회부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6)

이상 2건 5월 7일 회부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2)

5월 9일 회부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6)

이상 5건 5월 12일 회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5월 16일 회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6)

이상 2건 5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8)

이상 4건 5월 20일 회부됨

**상품권법안**

(2025. 5. 22.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3)

5월 23일 회부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5. 2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7)

5월 30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차규근 의원·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5)

6월 4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7)

6월 5일 회부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6. 5.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1)

6월 9일 회부됨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6. 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0)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2025. 6. 10. 민병덕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등 25인 발의)(의안번호 2210692)

이상 2건 6월 11일 회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4)

**디지털자산기본법안**

(2025. 6. 1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6)

이상 4건 6월 12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4)

이상 9건 6월 13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6)

이상 6건 6월 16일 회부됨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2025. 6. 1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1)

이상 7건 6월 17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김현정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9)

이상 2건 6월 18일 회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4)

6월 19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6월 20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이상 2건 6월 23일 회부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이상 3건 6월 26일 회부됨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6. 26.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8)

6월 2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2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4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윤석열 정부 12·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6)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4. 2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7)

이상 3건 4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4. 2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4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5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2025. 5. 2.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5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5. 7.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6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0)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6. 11.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이상 4건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2.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6)

이상 2건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6.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이상 2건 6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6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2025. 6. 2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6. 25. 임동현 외 61,4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7)

이상 2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2025년 6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국가보훈부	2	-	-	7	-	2
국무조정실	-	-	-	4	-	-
공정거래위원회	-	1	-	1	1	4
금융위원회	3	1	-	1	-	9
국민권익위원회	-	-	-	4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1